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3호 2017. 1. 20(금)

훈 령

- 남원시 훈령 제372호 남원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1
- 남원시 훈령 제373호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 ----- 4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17-71호 공인 등록 공고 ----- 7
- 남원시 공고 제2017-73호 등록기준사항 미달 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8
- 남원시 공고 제2017-74호 등록기준사항 미달 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9
- 남원시 공고 제2017-87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 10
- 남원시 공고 제2017-102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15
- 남원시 공고 제2017-113호 도로공고 ----- 16
- 남원시 공고 제2017-114호 개간사업대상지 선정사항 공고 ----- 17

예 규

- 남원시 예규 제18호 남원시 내수면어업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 ----- 18

회 람										
--------	--	--	--	--	--	--	--	--	--	--

남원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1월 20일

남원시 훈령 제 372 호

남원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

후보자 등록 신청서			
-------------------	--	--	--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선 거 구 명		연 락 처	·전 화 :
소 속 정 당 명			·휴대전화 :
신 청 직 위			

「남원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의회사무국장 귀하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접수증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선 거 구 명		연 락 처	·전 화 :
소속정당명			·휴대전화 :
신 청 직 위			

「남원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였음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사무국장 귀하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1월 20일

남원시 훈령 제 373 호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 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⑱년 월 일	⑳이 력	㉑년 월 일	㉒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 기록)			
㉓년 월 일	㉔내 용	㉕년 월 일	㉖내 용
㉗공 적 사 항			

공인 등록 공고

남원시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규정에 의한 공인 신조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9조(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남 원 시 장

□ 공인 신조 등록 [관광과]

1. 공인 등록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관광과 신설
2. 공인 등록 일 : 2017. 1. 17.
3. 관련 조 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6조
4.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등록	관 광 과 일산경비 출납원인	1.8cm×1.8cm 정방형 한글전서체	목재		관광과

남원시 공고 제2017 - 73호

등록기준사항 미달 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등록기준)를 위반한 전문건설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7. 1. 16.

남 원 시 장

1.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상업체 내역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행정처분업종 [등록번호]	행정처분기간	비 고
(유)영**설 [211314-000****]	한*희	남원시 용중2길 **(도통동)	기계설비공사업 [전북남원 2005-12-01]	2017. 1. 17. ~ 2017. 6. 30. (영업정지 5개월)	

2. 공고기간 : 2017. 1. 16 ~ 2017. 1. 30(14일간)

3. 공고방법 : 남원시 홈페이지, 건설산업정보통신망

4. 공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산업정보통신망(www.kiscon.net)에 공고하였으며,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사항 미달 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등록기준)를 위반한 전문건설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7. 1. 16.

남 원 시 장

1.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상업체 내역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행정처분업종 [등록번호]	행정처분기간	비 고
(주)삼**설 [2001111-040****]	윤*숙	남원시 교룡로 **(신정동)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광주동 2014-07-07]	2017. 1. 17. ~ 2017. 11. 16. (영업정지 10개월)	

2. 공고기간 : 2017. 1. 16 ~ 2017. 1. 30(14일간)

3. 공고방법 : 남원시 홈페이지, 건설산업정보통신망

4. 공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산업 정보통신망(www.kiscon.net)에 공고하였으며,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7 - 87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장승마을 소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1월 23일

남 원 시 장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 장승마을 소로 개설공사
- 나. 위치 : 전북 남원시 향교동 일원
- 다. 사업량 : L = 120m, B = 6m
- 마. 사업기간 : 2017 ~ 2018년(2년간)
- 사. 사업시행자 : 남원시장

※ 자세한 내역은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통지

2. 보상내용

남원시 장승길 소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권리 일체 (별첨 조서와 같음)

3. 열람기간 · 장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7. 01. 23 ~ 2017. 02. 06.(15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 (☎ 063-620-6464, 6466)
-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 열람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4. 보상금 방법 및 절차

가. 보 상 시 기 : 2017년 3월 말부터(추후 개별통지)

나. 보 상 방 법 : 개인별 현금 보상(계좌입금)

다.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3인(시·도지사 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보 상 절 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 성립시) ⇨ 공탁 및 수용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남원시청 도시과(도시정비담당)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남원시청 도시과(도시정비담당)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문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 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보상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도시과 (☎ 063-620-6464, 6466),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장승마을 소로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관계인			비고
	동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소유권의내용	
1	향교	709-3	709-5	대	20	5	남원시장승길	김*식				
2	향교	805	805-1	전	106	25	경기도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공*수				
3	향교	1155	1155-2	대	139	3		(국) 기획재정부				
4	향교	1096	1096-1	대	684	9	남원시 장승길	김*욱				
5			1096-2			82						
6	향교	1097	1097-1	전	393	34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광로	김*순				
7			1097-2			14						
8	향교	1098	1098-1	전	374	186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김*곤				
9	향교	1101	1101-1	대	985	96	전주시완산구만내3길	김*수				
10	향교	1150	1150-1	전	302	39		(국) 기획재정부				
합계		10				493						

물 건 조 서

□ 장승마을 소로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의 내용	
1	향교	1026-15	담장1	콘크리트 함석	2.6	m	남원시 장승안길	허*만				
			담장2		3.0	m						
계			2건									
2	향교	805-1	창고		15	㎡	경기도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공*수				
			담장		10.2	m						
			대문		1	식						
			기타나무		2	주						
			두릅		1	식						
계			5건									
3	향교	1026-3 708-4	주택		52.7	㎡		마을회관				
			창고문		1	식						
			담장		12.4	m						
계			3건									
4	향교	1026-3	창고	철 콘크리트	17.70	㎡	남원시 장승길	허*무				
			담장1		7.5	m						
			담장2		1.8	m						
			석류나무		1	주						
			대추나무		1	주						
			진달래나 무		8	주						
			대문		1	식						
계			7건									
5	향교	1026-20	담장		12.2	m	남원시 장승안길	장*옥				
			대문		1	식						
계			2건									

6	향교	1155-2	창고		10.8	m ²	남원시장승길	김*수					
			까데기		32.0	m ²							
			바닥포장	콘크리트	21.0	m ²							
			담장		6.4	m							
			대문		1	식							
계			5건										
7	향교	1096-1 1096-2	까데기1	스레트	28.4	m ²	남원시장승길	김*욱					
			까데기2	스레트	15.3	m ²							
			담장		21.8	m							
			개사		6.30	m ²							
			바닥포장		6.0	m ²							
			대문		1	식							
			창고문		1	식							
			보일러		1	식							
			살구나무		1	주							
			감나무		1	주							
			가시오가 피		1	식							
			옷나무		4	주							
계			12건										
8	향교	1097-1 1097-2	헨스	철망	28.4	m	남원시장승길	석*식					
계			1건										
9	향교	1098-1	헨스1	함석	5.9	m	남원시장승길	석*식					
			헨스2	철망	41.1	m							
계			2건										
10	향교	1101-1	헨스		35.0	m	남원시가방뜰길	김*수					
			담장		6.9	m							
			대문		1	식							
			감나무		1	주							
			기타나무		2	주							
계			5건										
총계		10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남원시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및 제11조(공인의 폐기) 규정에 의한 공인 신조 및 폐기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9조(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남 원 시 장

□ 공인 신조 등록 [문화예술과]

1. 공인 등록사유 :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문화관광과→문화예술과)
2. 공인 등록 일 : 2017. 1. 19.
3. 관련 조 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6조
4.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등록	문화예술과 일상경비 출납원인	1.7cm×1.7cm 정방형 한글전서체	목재		문화예술과

□ 공인 폐기 [문화예술과]

1. 공인 폐기사유 :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문화관광과→문화예술과)
2. 공인 폐기 일 : 2017. 1. 19.
3. 관련 조 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11조
4.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폐기	문화관광과 일상경비 출납원인	1.7cm×1.7cm 정방형 한글전서체	목재		문화예술과

◎ 남원시 공고 제 2017 -113 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1월 20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17-1	남원시 식정동 산54-3(임)	양*호	2017-건축과- 신축신고-20	47	8	359	남 원 시 식 정 동 산 54-3	359	양*호

공 고 (안)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추진에관한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3-294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1. 20.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 간
2. 개간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

토지의 소유자 (사업 시행자)		토 지 의 표 시						개간대상 면적 (㎡)
성 명	주 소	시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	
이**	광주광역시 ** *** ***-**	남원	대산	옥율	산21-2	임야	4,418	2,860
					산22-2	임야	2,663	2,260
					산23	임야	19,962	14,800
					산30-2	임야	6,152	2,300
					산31	임야	7,923	3,550
			사매	화정	산52-2	임야	32,304	850
				산60-6	임야	7,514	2,920	
이**	경기도 시흥시 **** ***** **-* ****	남원	운봉	화수	산30	임야	9,930	4,990

3. 목 적 : 개 전
4. 사업예정기간 : 2017. 03. . ~ 2018. 03. 30.
5. 열 략 장 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업시설) (☎ 063-620-6390)
남원시 내수면어업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1월 20 일

남원시 예규 제 18 호

남원시 내수면어업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

남원시 내수면어업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지관리하기”를 “유지 관리하기”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위)”를 “(적용범위)”로 하고, 같은 조 중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를 “제11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남원시에”를 “시에”로, “3년이상 거주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3년 이상 거주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동 순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을 “같은 순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을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하는 자”를 “않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한 자와”를 “않는 사람과”로, “아니한 자”를 “않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1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같은 호

및 제6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중 “「내수면어업법」과 수산관계법령”을 “「내수면어업법」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발령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원시의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질서를 <u>유지관리하기</u> 위하여 「내수면어업법」에 <u>의한</u>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유지 관리하기</u> ----- ----- <u>따른</u> ----- ----- -----.</p>
<p>제2조(적용위) 이 지침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 및 <u>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에서 내수면어업 허가·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u></p>	<p>제2조(적용범위) ----- ----- <u>제11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u>----- --- <u>받으려는 사람에게</u> ----- -----.</p>
<p>제4조(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처리) ① (생략) ②내수면어업 허가·신고는 신청일 현재 <u>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년이상 거주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내수면어업법」 제10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 후 동 순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처리하여야 한다.</u></p>	<p>제4조(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시에</u> ----- ----- <u>3년 이상 거주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u>----- ----- -- <u>같은 순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u> ----- -----.</p>
<p>제5조(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p>	<p>제5조(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p>

한) ① (생 략)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내수면어업 허가·신고를 제한 하여야 한다.

1. 어업을 생업목적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2.·3. (생 략)

4. 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와 형 집행종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신병, 사고 등으로 1년이상 어업을 할 수 없는 자

6. 미성년자 또는 만70세 이상인 자

7.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제6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내수면어업법」 과 수산관계법령을 준용한다.

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
-----.

1. -----
않는 사람

2.·3. (현행과 같음)

4. -----

----- 않는 사람과 -----
----- 않는 사람

5. ----- 1년 이상
----- 사람

6. -----
----- 사람

7. ----- 종사
하려는 사람

제6조(준용) -----

----- 「내수면어업법」 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별지 제1호 서식]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어업의 종류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명칭			
포획채포물의 종류			
평가항목 기재			
구 분	기 재 내 용	비 고	
생 계 관 련			
장 애 인	()급		
부 양 가 족	명		
남원시 거주기간	년		
면허부여 횟수	회		
어업인후계자	여, 부		
위와 같이 내수면어업에 종사하고자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원 시 장 귀 하			

※ 패류채취어업의 경우 형망의 망목 규격은 8mm×8mm이상으로 한다.